

세살마을연구원규정

(명칭변경 2016.10.25., 2017.08.2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살마을연구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연구원은 가천대학교 세살마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부른다.

제3조(소재) 본 연구원은 가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글로벌캠퍼스 내에 둔다.

제4조(사업) ①본 연구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통해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6.10.25.)

1. 출산 및 영유아 부모 및 교사교육에 관한 연구 및 교육
2. 출산 및 영유아 부모 및 교사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출간
3. 언론 매체를 통한 공익 캠페인
4. 각종 심포지엄 개최
5.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교육 및 캠페인
6.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출산 및 영유아 부모 및 교사교육 관련 정보 제공

②본 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외부기관의 연구를 수주하고 수행한다.(신설 2016.10.25.)

제 2 장 조 직

제5조(구성) 본 연구원에는 연구원장, 연구교수, 사무국장, 연구원, 자문위원회, 행정실을 둔다.(개정 2016.10.25.)

제6조(연구원장) ①연구원장은 본 대학교의 전임 또는 비전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연구원장은 본 연구를 대표하고 사무전반을 통할한다.

4-1-16~2 제4편 부속기관

제7조(사무국장) ①사무국장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사무국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행정 업무 및 대외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제8조(연구원) 연구원은 수석연구원, 연구교수, 연구원 등으로 구분하고, 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6.10.25.)

1. 수석연구원은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 소지자

2. 연구교수는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 소지자(개정 2016.10.25.)

3. 연구원은 석사 학위 소지자

제9조(사무직원) 본 연구원의 제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직원과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 3 장 자문위원회

제10조(자문위원회) 본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구성) ①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며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원장 부재 시는 자문위원 중 호선에 의해 선출된 1인이 이를 대행한다.

③자문위원은 교내·외 인사 중 창의적 인재 육성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 4 장 재정

제12조(재정) 본 연구원의 재정은 교비와 외부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3조(회계연도) 본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08월 29일부터 시행한다.